

☎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\*\*\*\*/전송(02)790-8911  
보험정책국 국장 김기성 [6574]/ 보험팀장 백영기 [6581]/ 팀원 문성현 [6587]/E-mail: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5331호

시행일자 2020. 7. 31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,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,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64, 165, 166, 167호(2020.7.30.)  
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-1342, 1343(2020.7.30.)  
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3399(2020.7.30.)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,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,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을 안내한바, 이를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주요내용]

-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(시행일 : 2020. 9. 1.)
  - 항CCP항체[IgG][정밀면역검사] 신설
  - 글리세롤 용해시간 측정 신설
  - 눈의 계측검사[편측], 인도시아닌 안저 혈관조영술[편측] 신설 등
- ※ 관련 문의 : 보건복지부(044-202-2663)
-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(시행일 : 2020.9. 1.)
  - 치료재료 중 인조안구체 건강보험 급여목록과 급여 상한금액 신설 및 비급여 목록 삭제
- ※ 관련 문의 : 보건복지부(044-202-2663)

○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

-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개선(시행일 : 2020.8.1.)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변경(시행일 : 2020.8.6.)

※ 관련 문의 : 보건복지부(044-202-2741)

붙임 : 고시개정문 및 대비표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